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입영 후 현역병 복무 불가자 귀가 조치〉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635호)

2025. 11.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덕 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대식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3.
3. 회부연월일 : 2025. 9.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에서 현역병 입영 후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가 2025년 6월 30일부로 폐지되고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됨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현역병 입영자는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을 하는 상황임.

그러나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정상적인 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영하는 경우나 학군 후보생 추가 합격 등과 같이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하는 불합리한 실정임.

이에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영 부대의 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병훈련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현역병 입영자가 ①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인사법」에 따른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에 선발된 사람인 경우에, 입영부대의 장은 해당 입영자를 귀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귀가한 입영자에 대하여 입영판정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 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 처분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7조(입영 후 귀가) ① 입영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에 대하여는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귀가시킬 수 있다. 1.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현행	개정안
	2.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인사법」에 따른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에 선발된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 2020년 12월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 의무자가 입영 후 각 입영 부대 별로 실시하는 입영신체검사가 폐지되고 입영 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실시)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실시됨에 따라 입영 후 귀가 제도 또한 폐지되었음.

- 입영판정검사 제도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대상 부대를 확대하여 2025년 7월부터는 모든 입영 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됨.

＜입영판정검사 연도별 실시 현황＞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7.1.
대상 부대	2작사 (7개사단)	2작사 (6개사단) +지작사 동부권(6개사단)	2작사(6개사단) + 지작사 전체(14개사단)		전면 시행 (육군훈련소, 해·공군, 해병 포함)

□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복무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하여 입영부대의 장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병역법」 제61조¹⁾ 및 동 법 시행령 제129조²⁾에 따르면 징집 통지서를 받은 병역 의무자가 질병, 심신장애로 병역 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병역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병역법」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2)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한다.

<연기 사유별 입영연기 현황 >

(단위: 명)

구 분	계	대학 진학 예정	출국 대기	질병	자격 시험	입관 검사	취업	채용 시험	군 지원	기타
'25년 (9월)	14,988	1,432	2,783	2,438	1,422	2,456	604	810	493	2,550
'24년	34,165	6,638	6,365	4,619	2,583	2,734	2,005	1,070	890	7,261
'23년	42,747	8,434	6,786	6,146	3,186	3,287	2,705	1,741	1,245	9,217
'22년	46,486	7,575	6,923	6,257	3,319	1,931	2,644	1,574	1,434	14,829

□ 또한, 「병역법」 제65조제1항³⁾에 따라 입영 후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등 병역처분 변경이 가능함.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영 후 귀가에 따른 병역 의무자의 불편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 부대 입영 전 병무청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 도입 취지와 현행법 상 입영 의무자가 입영판정검사 후 발생한 사정으로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입영연기 제도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4) 군 부대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 후 재입영까지 평균 3개월의 대기기간이 소요

- 국방부 및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이후 발생한 질병·부상을 입영 전에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입영판정검사 제도 취지와 병역 의무자의 편의 및 행정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입영 후 귀가하여 입영판정검사를 다시 받는 것보다 입영 전 입영을 연기하거나, 입영 후 병역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07